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대 전 고 등 법 원

제 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4나3663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
원고, 항소인	B문중
피고, 피항소인	1. BB
	2. BC
	3.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
	4. BD
	5. [redacted]회사법인 [redacted]주식회사
	6. [redacted]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. 9. 24. 선고 2012가합730 판결
변 론 종 결	2016. 4. 20.
판 결 선 고	2016. 5. 1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원고에게,

1. 피고 BB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, 4 부동산에 관하여 [redacted]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1995. 9. 21. 접수 제24548호 및 같은 법원 1996. 5. 21. 접수 제104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2. 피고 BC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2, 4,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. 11. 14. 접수 제3088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3. 피고 주식회사 [redacted]은행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,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97. 5. 9. 접수 제110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4. 피고 BD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, 8 부동산 중 각 3/4 지분에 관하여 2005. 8. 4. 같은 법원 접수 제220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5. 피고 농업회사법인 아라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, 5 부동산 중 각 2/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2. 9. 24. 접수 제300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6.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7 부동산에 관하여 위 4항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문 11쪽 17행의 "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" 뒷부분에 "(한편,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가합27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호로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과 유사한 청구를 하였으나,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,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. 4. 15. 확정되었다.)"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에 기재된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인규

판사 박선준

판사 방이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11-14

별 지

(부동산목록)

1.	[redacted]시	임야 13,372㎡
2.		임야 169,488㎡
3.	[redacted]시	임야 101,553㎡
4.	[redacted]시	임야 209,950㎡
5.		임야 34,612㎡
6.		임야 215,008㎡
7.		임야 225㎡
8.		임야 14㎡
9.		임야 298㎡
10.		임야 404㎡
11.		임야 19,934㎡
12.		임야 47,603㎡
13.		임야 1,488㎡
14.		임야 9,917㎡
15.		답 2,048.6㎡